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43
----------	------

2023년 9월 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1일
- 다. 상정일자: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 가. 제안이유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운영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추가(안 제16조제5항).
 - 위원장 직무 규정 신설(안 제1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보완 위원장 직무 규정 신설(안 제17조).
- 위원장 직무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6. 15.~7. 5.) 결과: 붙임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사항('23.3.27) 등을 반영하여 운영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16조제5항은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위원의 연임 가능 조항은 있으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임도 가능한 상황인바,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18조~제20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인용하여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이견은 없음.

다만,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개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경제 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7조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의 참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 회의 일자를 연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이 사안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근거¹⁾로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항	내 용
제16조	○ 위원 임기: 2년(1회 연임)
제17조	○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
제18조	○ 해당 안건의 당사자(친족 포함)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제척 ○ 당사자의 기피, 위원의 회피 신청 규정
제19조	○ 해당 위원의 해촉(비밀누설, 출석률 등) 및 예외(천재지변 등) 규정
제20조	○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의 사전 통보 규정(회의 개최 15일 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022) p.229

-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한다.
- 관련 입법례: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서장으로 한다”를 “부서장이 맡는다”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생략)	제7조(사용료의 면제) (현행 제1항과 같음)
제8조(사용기간) ①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시설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u>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u>	제8조(사용기간) ① ----- ----- ----- <u>한 차례만</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성) ① ~ ④ (생략)	제16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u>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
⑥ <u>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u>	⑥ ----- ----- <u>부서장이 맡는다.</u>
제17조(제척·회피 등) ① <u>협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u>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② <u>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u>	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u>

<신 설>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

<신 설>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18조(운영)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20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